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13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 생]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배진호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 간의 지위

1) 원고는 현재 소외 체납자 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83,466,600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피고는 亡 D의 배우자로 아들인 체납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체납경위

1) 체납자는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를 받고 도봉세무서로부터 조사파생자료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며,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국세 83,466,6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제기일 기준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순번	관할 서	세 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성립일자	고지세액 (①)	가산금 (②)	총 체납액 (①+②)
1	성북	부가가치세	2011.7	2012.3.31.	2012.12.31.	28,322,390	20,220,360	48,542,750
2	성북	부가가치세	2012.1	2012.6.30.	2012.6.30.	5,663,930	4,247,510	9,911,440
3	도봉	종합소득세	2011	2012.8.31.	2011.12.31.	4,714,380	3,535,630	8,250,010
4	도봉	종합소득세	2012	2014.6.30.	2012.12.31.	9,379,040	6,738,370	16,117,410
5	도봉	종합소득세	2016	2019.7.31.	2016.12.31.	626,210	18,780	644,990
계						48,705,950	34,760,650	83,466,600

2. 피보전채권으로서 조세채권의 성립

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1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나. 또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다. 사안을 살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 D의 공동상속인인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된 2021. 9. 27. 이고, 위 <표 1>에 기재된 조세채권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사해행위일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 사해행위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이하생략)」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고).

2) 亡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1. 8. 3. 사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이에 따라 개시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채납자 및 소외 E) 202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 또한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2021. 9. 30. 접수 제197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1. 9. 2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나.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채무초과

1) 사해행위일 현재 채납자는 아래 <표 2-1>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1,517,041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표2-1>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적극재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평 가 액	비 고
예금 잔액	F은행	1,500,544	갑 제7호증의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갑 제7호증의 2 회신문
	G조합	16,497	

적극재산 계	1,517,041	
--------	-----------	--

2) 소극재산은 아래 <표 2-2>와 같이 국세채납액 본세만 47,685,040원에 달하여 이미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표2-2>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소극재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평 가 액	비 고
조세 채무	국세 채납액	47,685,040	본세만 계산 (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소극재산 계	47,685,040	
	적극재산 계 - 소극재산 계	△46,167,999	채무초과

다. 소결(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고).

채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가. 채납자의 사해의사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채납자는 직계존속인 亡 D의 2021. 8. 3.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 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납세금이 상당하여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시 관할세무서인 성북 및 도봉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채납처분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을 알고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2021. 9. 27.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채납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납자의 부모자식 사이로서 채납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채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5. 제척기간

가.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도과 여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2021. 9. 27. 이므로 아직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도과 여부

원고 산하 국세청은 약 2만 명의 국세공무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부사무처리규정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서울 지방국세청의 경우 체납추적팀, 이하 ‘체납추적팀’이라 합니다)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2327호, 2019. 9. 3. 공포) 제177조 참조), 체납추적팀은 일선 세무서에서 요청한 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2327호, 2019. 9. 3. 공포) 제178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체납추적팀은 주기적으로 국세청 내부전산망의 자료를 추출하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2. 1. 4.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고(갑 제5호증 상속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는 2022. 1. 6. F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회신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2 금융거래내역 및 은행 회신문).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중간생략)...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

의 존재와 채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22. 1. 6. 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합니다.

6.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인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7.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채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서울시 도봉구 K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03.57㎡

2층 569.10㎡

3층 569.10㎡

4층 569.10㎡

5층 569.10㎡

6층 569.10㎡

7층 569.10㎡

8층 569.10㎡

9층 569.10㎡

10층 569.10㎡

11층 569.10㎡

12층 569.10㎡

13층 569.10㎡

14층 379.40㎡

15층 379.40㎡

지층 576.54㎡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L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층 M호 84.6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시 도봉구 H 대 22,75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7810분지 39.4

